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민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3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1월 20일

발 의 자: 이민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 김규남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문성호, 민병주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소영철, 송경택, 심미경, 옥재은, 유정인, 유정희, 윤기섭, 윤종복, 이경숙, 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 이영실, 이종태, 장태용, 최민규, 최진혁, 홍국표 의원(37명)

1. 제안이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으로 정비사업 관련 협의체 운영과 조합 해산 시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전 구성·운영되는 협의체 규모를 확대하여 참석자로 규정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, 손실보상 대상자 등 분쟁당사자를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 및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유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협의체 구성 관련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협의체 구성원을 참석 대상자까지 확대함(안 제67조)
- 나. 조합 해산 관련 근거 조항을 명시함(안 제75조, 안 제8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법 제11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67조제2항 본문 중 “구성하며,”를 “구성하며, 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”으로, “운영한다”를 “열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운영할”을 “협의체를 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”를 “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, 제1호에 따른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제1호에 따른”으로, “1명을 호선하며 제16조제3항은 협의체 구성 시 준용한다”를 “선출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협의 조정한다”를 “협의·조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”를 “열렸으나”로, “개최하여”를 “열어”로 한다.

3. 사업시행자

4.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

5.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

6. 법 제74조제4항,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

7.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제3항에 따라 협의체 구성할 때에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.

제75조제9호 중 “조합 해산”을 “법 제86조2에 따른 조합 해산”으로 한다.

제86조제4호 중 “조합 해산”을 “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해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7조(협업체 구성 및 운영) ① <u>구청장은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또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업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협업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하며,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협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하며 제16조제3항은 협업체 구성 시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검증위원회</u></p>	<p>제67조(협업체 구성 및 운영) ① <u>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법 제11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업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--- 구성하며, 협업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-</u> <u>--- 열어야 한다. -----</u> ----- ----- 협 <u>의체를 열 --.</u></p> <p>③ ----- ----- <u>--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, 제1호에 따른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제1호에 따른 --- 선출한다.</u> <u><후단 삭제></u></p>

“는 “협업체“로 본다.

1. (생략)

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④ 협업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.

1. 사업시행자

2.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

3.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

4. 법 제74조제2항,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

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1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3. 사업시행자

4.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

5.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

6. 법 제74조제4항,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

7.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제3항에 따라 협업체 구성할 때에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.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.

1. ~ 4. (생략)

⑥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·조정할 수 있다.

⑦·⑧ (생략)

제75조(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)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“그 밖에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
1. ~ 8. (생략)

9.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,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,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

제86조(자료의 제출) 추진위원장

⑤ -----
-- 협의·조정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 열렸으나 -----

----- 열어 -----
-----.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
제75조(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) 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

----- 법 제86조2
에 따른 조합 해산 -----
--

제86조(자료의 제출) -----

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(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4.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
5. (생략)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해산 -----
5. (현행과 같음)